



보도	2025.4.10.(목) 조간	배포	2025.4.9.(수)			
담당부서	서민금융보호국 검사1팀 검사2팀	책임자	팀	장	김소현	(02-3145-8250)
		담당자	선	임	김용겸	(02-3145-8251)
		책임자	팀	장	김상희	(02-3145-8255)
		담당자	수	석	박영섭	(02-3145-8256)

금감원.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

-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구축 지도 -

- [1] **금감원**은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('24.10.17.시행) 계도기간이 '25.4.16.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*함
 - * 금감원은 '24.9월 대부업권의 동법 준비실태 파악을 위해 1차적으로 현장점검(30개업체) 기실시
- [2] 금번 점검은 **4.10.(목)**부터 **4.30.(수)**까지 실시되며, 대부업체가 제출한 **자율점검 내역**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,

연체이자 제한, 양도규제, 추심총량제,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**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**하고 **법 시행후**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**법 이행실태**를 **점검**할 예정임

<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 개요>

- (점검대상) 10개 대부업체 (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)
- **(일 정)** '25.4.10. ~ 4.30.(연인원 70여명)
- (점검내용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사전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점검
- ③ 취약점,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,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,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, 현장점검,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음
 -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

Ⅰ. 실시 배경

- □ 연체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이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'25.4.17.부로 전면 적용됨
 - 동법은 **연체이자의 제한**, **양도규제**, 추심총량제, 사적 채무조정절차 등을 신설하여 채무자보호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
- □ 그간 금감원은 대부업계가 소액 개인금융채무 비중 및 연체율이 높고, 추심·양도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전부터 현장점검, 자율점검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계도해왔으나,
 - **자율점검** 분석결과, 일부 업체는 **법 시행 준비**가 **일부 미비**한 것 으로 나타나 **적극적 지도·감독이 필요**한 상황

<그간 점검현황>

- (1차 현장점검 : '24. 9.~10월)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에 임점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규제를 망라하여 내부통제 장치 구축현황을 점검
- (자율점검: '24.11월)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 전체(876개사)에 대해 업체별로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자율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
 - * 1차 현장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효과
- □ 이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부업계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

Ⅱ. 현장점검 실시계획(안)

- □ '25.4.10. ~ 4.30. 기간 중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행실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
 - 금감원은 업계가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통제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중이며,
 - 금번 점검에서는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·대형사 중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
 - ※ 중·소형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점검할 예정임

<주요 점검사항>

- (내부통제 현황 확인) 도달주의 도입, 연체이자 제한, 양도규제, 추심행위 규제, 자율 채무조정 제도 운영 등 신설규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 확인
- (법 이행실태 점검) 채무조정 실적,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장치의 작동실태 및 주요 규제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 여부 점검
- □ 점검을 통해 위규행위 방지를 위한 **내부통제 구축현황** 및 법 시행일 ('24.10.17.) 이후 **법 이행실태**(위반행위 점검)를 **확인**할 예정임
 - (내부통제 구축현황) 주요 규제항목별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,
 위규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(전산)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및 보호감시인 등의 점검수단 등을 확인
 - ① (도달주의 도입) 사전통지서 도달 후에만 기한이익 상실, 주택경매, 채권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지서 도달여부 및 일자 기록·관리
 - ② (연체이자 제한)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가 부과 되지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상 연체이자 산정로직 변경
 - ③ (양도규제) 신용회복 신청 채권, 3회 이상 양도채권 등 양도제한 채권이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제한 사유를 구분관리
 - ④ (추심총량제 등)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 등 통제를 위해 추심이력을 기록·관리하고 초과시 전산시스템으로 추심행위 차단
 - (자율 채무조정) 채무조정신청권을 보장하고, 채무조정 신청시 기한이익 상실, 경매신청 등 채권 회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리
 - (법 이행실태 점검) 채무조정 실적,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 장치의 작동실태를 확인하여 도입효과를 분석하는 한편,
 - 법 시행 후 계도기간 종료전까지 발생한 거래 건을 대상으로 중요 규제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

Ⅲ. 향후 추진계획

- □ 점검결과 내부통제 미흡사항은 조속히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하고, 계도기간 중 법규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엄중지도*하는 한편,
 - * 고의·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제재 실시
 - 법규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·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하여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예정임
- □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**개인채무자 권익** 보호의 워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감독역량을 집중**하겠음
 - 중·소형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('25년 하반기) 하고, 민원 빈발업체 등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한편,
 -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
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